



보도	2023.10.18.(수) 14:00	배포	2023.10.18.(수)			8.(수)
ChCh A 17	감사인감리실 감사인감리총괄팀	책임자	실	장	김택주	(02-3145-7860)
담당부서 		담당자	팀	장	유형주	(02-3145-7862)

금감원과 4대 대형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.

금융감독원	!은 기 업들 의	l 불편 및 아	 로사항 을	야기하는 67	가지 감사계약 ·
감사업무	관행을 Big4	회계법인과	공유하고	<mark>개선방안</mark> 을	마련

Big4는 기업부담 완화 를 위해	11월말까지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 하는
한편,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이	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[*] 할 것을 다짐

* 감사위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경우 감사보수 인상을 최소화

I. 개요

금융감독원은	감사계약	및	감사업무	수행과정에서	기업들의
지속적인 불만	· 제기 사형	간과	관련하여,		

- 삼일·삼정·안진·한영회계법인(이하 "Big4")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,
- '23.10.18일(수) Big4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논의된 내용을 담아 「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」을 발표

「4대 대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간담회」개요

- □ **(일시·장소)** '23.10.18.(수) 14:00~15:00, 금융감독원 11층 회의실
- □ (참석자) 금융감독원, 4개 대형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
- [금감원] 장석일 전문심의위원, 김택주 감사인감리실장
- [회계법인](삼일) 오기원 감사부문 대표, (삼정)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, (안진) 장수재 감사부문 대표, (한영) 이광열 감사부문 대표

Ⅱ. 감사업무 관행 개선 주요 논의사항

1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

- ① 기업은 감사계약시 감사보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공인 회계사의 **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** 등 **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해** 감사보수 협의에 **어려움**을 토로
 - 실제, 최근 2년간 Big4의 감사계약 과정을 점검한 결과 감사보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, 기업별 시간당임률의 편차도 다소 발생*
 - * 감사위험에 따라 시간당임률의 격차는 발생할 수 있으나, 일관된 판단기준은 필요
 - ⇒ (개선방안) ¹ 감사계약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고, ²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
- ② 대부분 감사계약서에는 감사보수 추가 인상 사유 뿐만 아니라 환급 사유도 기재*되나 실제 환급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
 - * (외부감사표준계약서 제8조제2항) 제1항의 감사보수는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, 매출총액, 사업장 수, 감사소요시간, 연결대상회사 수의 증감, 지분법 적용대상 회사 수의 증감 등 **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조정** 계산하고 잔금 지급 시에 조정된 과부족 금액을 가감한다.
 - ⇒ (개선방안)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,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하여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

2 부대비용 청구 적절성 제고

- ③ 기업은 감사보수외 여비 등 실비변상적 비용*("부대비용")을 지급하나, 회계법인이 부대비용 협의시 세부명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**가 있어 애로사항이 있음
 - * (외부감사표준계약서 제8조제3항) 감사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실비변상적 비용을 회사에 별도로 청구하며,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.
 - 1. 출장비(숙박비, 교통비 등), 2. 인쇄.복사비, 3. 통신비와 각종 조회관련 비용,
 - 4. 실험비, 5. 감정료.자문료, 6. 측량비, 7.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비용
 - ** 회사가 요구하면 제공하는 경우는 있으나, 회계법인별 정해진 양식이 없음
 - 실제 Big4가 청구한 부대비용 중 일부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
 보기 어려운 항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
 - ⇒ (개선방안) ¹부대비용 청구시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는 한편, ²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경우 미청구
- ④ 그간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아 실제 **회계법인의 부대** 비용 집계 및 내부 통제 절차에 미흡한 사항이 확인
 - 또한, 각 감사팀별로 부대비용을 집계하여 기업과 협의하며,
 회계법인 차원의 검증 절차도 미비
 - ⇒ (개선방안) ¹회계법인 내부적으로 부대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, ²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, ³회계법인내에서 부대비용을 점검하는 시스템 마련

3 외부감사 불합리한 관행 개선

- 5 외부감사시 **외부평가** 및 **포렌식 등의 회계법인 요구가 증가** 함에 따라 **기업의 불만**이 높아지고 있음*
 - * 일부 기업은 "회계법인이 합리적 이유없이 관계회사 보유자산에 대한 외부평가를 요구하고, 친분있는 특정 기관의 선임을 유도"한다고 주장
 - 반면, **회계법인**은 기업이 **저가의 불량한 외부평가업체를 선임** 하여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**우려**를 표명
 - ⇒ (개선방안) ¹ 외부평가 등 요구시 필요성을 감사대상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문서화,
 - ²평가기관 선정은 기업 의견을 존중*, ³외부평가 재요구 또는 포렌식 요구시 회계법인내 품질관리실과 사전 논의
 - * 회계법인이 감사목적을 감안하여 일부 기관의 평가를 제한하는 방식은 가능하나, 특정 기관을 권유하는 방식은 자제할 필요
- ⑤ 지정감사 등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**감사보수는 증가**한 반면, 수습회계사의 투입 증가 등으로 기업의 수검부담이 높아지고 수준 높은 **감사서비스**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 제기*
 - * (개별회사 사례) 주기적지정으로 감사인이 교체되고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40% 가량 증가하였으나, 증가한 감사시간 중 70% 가량이 수습공인회계사의 감사시간으로 대체되어 양질의 감사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수검부담만 증가하였다는 의견
 - ⇒ (개선방안) ¹중요 계정과목(매출, 매출원가 등)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, ²수습·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, ³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

Ⅲ. 참석자 주요 발언 요지

- □ 금융감독원 장석일 전문심의위원은
 -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, 외형확대와 높아진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, 감사계약·감사업무 과정에서 기업에 보다 투명 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
 - Big4 등 대형회계법인이 모범 선례가 되어 전체 회계업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
- □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들은
 - 회계법인 역할의 중요성과 회계법인을 바라보는 높아진 잣대를
 잘 이해하며,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금년 11월까지 개선할 것이며,
 - 감사보수와 관련하여서도 감사위험과 무관하게 부당한 감사 보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
 - 피감사회사인 **기업의 권리와 편의를 확대**하고 **자본시장 참여자의**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**지속적으로 노력**할 것을 약속

Ⅳ.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- □ 금번 관행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**외부감사 관련 부담**을 **완화**하고,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**책임의식**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
- □ 금융감독원은 금번 논의사항의 개선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, 향후에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관행 등의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노력할 계획

[☞]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